

1.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2020년 1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차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차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보주체도 모르게 자동화된 방식의 개인정보 생성,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 증가, 서비스와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등 환경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각 국은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Privacy by Design and Default) 제도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p>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내용을 얼마나 깊게 담아야 할지,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사업자가 창의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 범위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p> <p>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p> | | |

2)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p>효율적인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갖고 있는 개인의 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하는 것만이 취지를 살리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확신을 갖기 위한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p> <p>원칙적 방향은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최적화된 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각 기관별 세부업무조정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될 것입니다.</p> | | |

3) 현재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후보자의 전반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사회는 디지털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데이터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자유로운 창업이나 기업의 빠른 산업전환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면 국제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규제는 확실히 문제 되는 것들은 금지하되,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와 혁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할 수 있는 허용범위는 광범위하게 늘리되, 개인정보의 악용할 때의 제재는 지금까지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율

인공지능 서비스는 검색, 추천 알고리즘, 챗봇 뿐 아니라 채용, 금융서비스, 범죄 예방 등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점차 그 활용이 넓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영역 전반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삶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편향성과 위험성이 사람의 인권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인권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주로 산업 육

성에만 초점이 맞춰져왔습니다. 최근 충격을 안겨준 법무부과기부의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증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도외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등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1)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특히, AI 채용 등 공공기관이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p>인공지능 활용이 늘어나면서 명과 암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p> <p>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p> <p>과기정통부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국회에도 관련법안*이 발의되어있습니다.</p> <p>*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 2021.7.) /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의원, 2021.7.)</p> <p>공공기관의 채용 등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민간의 채용 등 인공지능 도입에도 사전 안내 및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p> <p>현 정부는 이미 인공지능 활용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투명성’ 원칙과 인공지능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침해금지’ 원칙 등의 윤리원칙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p> <p>앞으로 △인공지능 사용 업무에 대한 사전고지 및 설명의무 등 인공지능사회를 준비하는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를 열면서도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p> | | |

2) 적절한 안전장치가 도입될 때까지 공공장소 얼굴인식 등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판매·사용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p>동의합니다. 안전장치가 도입될 때까지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동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부 시스템(출입국관리 등)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 | |

3) 인공지능이 편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학습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편향성과 차별, 프라이버시 등 인권 침해 및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큼니다. 이에 인공지능의 인권 과 안전을 감독하고 도입 기관의 책무성과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법률적 규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규율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전 세계적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혜택과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인간 중심의 AI시대’ 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조화롭게 조율할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EU는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안전과 기본권, 기존의 법률 준수 존중, 법적 불확실성 제거, 기본권 및 안전 요건에 대한 거버넌스 향상,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단일시장 발전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법안(AI Regulation*, ’ 21.4월)’ 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총 7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이나 인권에 관한 사회적 우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민(20.7), 양향자(20.9), 민형배(20.10), 송갑석(20.10), 정필모(21.7), 이 용빈(21.7), 윤영찬(‘21.11)

3. 통신비밀의 보호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기자 및 야당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의 무분별한 수집은 비단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니며,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로의 권한을 활용해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자의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당한 정보주체에게는 통지조차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통신자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통신자료(가입자 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일정 기간 후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p>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찰 논란’에 대해 법령에 의한 행위라 ‘사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인 것은 맞지만 지나친 건 경계 해야 하며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통신자료를 조회하지 않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중요 범죄의 단서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수사기관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남용되는 것을 무조건 허용해서도 안됩니다.</p> <p>범죄수사의 효율성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방지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수사기관들의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친 통신자료 수집은 경계해야하므로, 사후 정보주체가 통신자료 이용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 | |

2) 통신자료 제도 외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화, 기지국 수사 및 실시간 위치추적 요건의 엄격화, 인터넷 패킷 감청의 요건 강화 등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통신비밀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
|--|
| <p>개인의 통신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하여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에 대한 보호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p> |
|--|

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별건 수사라든가 사찰이라든가 하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망중립성 보장

한국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망중립성을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5G 환경으로의 변화를 명분으로 통신사들이 망중립성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미 유럽연합은 망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5G 시대에도 망중립성 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디지털화로 국민들의 데이터 소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차별없이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 중립성 원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망 중립성 규제 강화는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경쟁을 약화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을 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원칙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도 일부 있으나, 우리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기간 통신서비스로 하여 차단 금지, 차별 금지 의무를 부과해 왔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차단, 불합리한 차별 등을 통한 이용자 이익침해’를 금지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을 일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를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5.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규율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락인(Lock-in) 효과, 데이터 지배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는 승자독식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일방적 정책 변경,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과 상생을 위해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거래질서 구축과 독점 및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p>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기본 취지에 공감합니다.</p> <p>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주문 및 결제 정보 등을 활용한 수익을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p> <p>경기도에서는 소비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기업의 폐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배달특급의 공공 플랫폼을 출시하였으며,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소비자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댓가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향후 플랫폼 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p> | | |

2) 부당기업인수·이해충돌·차별취급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p>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좋은 제안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p> | | |

3)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 과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와 근절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와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및 관리방안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중이기에 이와 연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을의 기본권, 소상공인 피해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4) 빅테크/플랫폼이 맞춤형 광고 등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 혹은 행태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거나 얼굴인식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빅테크/플랫폼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편의성의 증진, 기술의 혁신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커다란 간극에서의 절충점을 잘 찾고,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경청하여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 만약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다면 그것이 안전하다는 부족함 없는 확신을 줘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제도 개선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 국민식별번호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왔고, 수차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제한적이거나 허용되었고,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령은 많고 통신, 금융, 의료 등 주요 민간 부문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p>주민등록번호는 고유성과 불변성 및 전속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출 된다면 커다란 불편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의의 일련번호로의 변경은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p> <p>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개편이 있었으나 유출시 국민 불편은 여전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p> <p>이미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의 디지털화를 시행하였으므로 경험과 노하우는 충분합니다. 디지털 신분증은 사진 외 개인정보는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담겨 있고, 스마트폰의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등의 기능과 결합하여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개인 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없애겠습니다.</p> <p>특히, 복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까지 접목하여 디지털 신분증으로 전환한다면 이런 보안성, 편의성 그리고 전속성 등에서도 뛰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 | | |

2) 주민등록번호 대신 (조세번호, 건강보험번호 등)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p>적극 동의합니다. 국가의 주민등록번호 활용 제한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p> <p>주민등록번호 외에 활용 목적에 따라 운전면허와 여권번호, 통장번호 등 각기 다른 자기 식별 번호가 존재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정보의 보관과 운영을 분산할 필요 있습니다.</p> | | |

7. 근로자 감시에 대한 규율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생체인식기술 등 사업장 내에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감시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설안전 등 경영상 목적으로 도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는 도입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성능이나 감시 범위,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고지되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인 근로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인 고용주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노사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감시설비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원격으로 근로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감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 경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전자적 감시설비가 활용되고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전자적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합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p>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의 사유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감시 설비의 유형과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설치 여부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 하도록 할 것입니다.</p> | | |

2)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자 감시를 막고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설치된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내 감시 설비 설치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유관 부처로 하여금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감시 설비가 근로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침해하는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8. 인터넷 표현의 자유

소위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 법안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비단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소위 1인 미디어, 결국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책임을 묻거나 허위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라고 간주되는 정보)에 대해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약했던,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개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가짜뉴스 단속을 위해 이용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혹은 가짜뉴스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로 인한 인권침해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영향력이 증 | | |

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성 언론과 포털에만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는 대책은 부족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이용자(가짜뉴스 생산 유통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 있습니다.

실제 우리당 윤영찬 의원은 작년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유튜브 및 SNS를 포함 정보통신망 상에서 가짜뉴스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가짜뉴스 차단 의무 부과는 자의적 차단 결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월권적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임의적 검열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이슈입니다.

예컨대, 카카오톡 등 개인의 사적대화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나 불법정보의 차단은 사실상 개인의 대화를 들여다보는 감청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개인의 사적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입니다.

2) 현행 임시조치 제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익명 표현의 자유 강화를 위한 균형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 |
|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인터넷상 게시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 | | |

당한 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적 차단조치를 하는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적으로 임시적 차단조치하는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가 있는데, 특히 후자가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기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거짓정보를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부터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임시 조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포털, SNS를 통한 소통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강화는 비대면시대에 달성해야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차단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과 임시 차단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사이에서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

다만, 현행의 임의적 임시조치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의 경우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하고, 임시조치 기간 이후에 게시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익명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됨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임시조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망법」(박광온의원, 2021.1)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중

9.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현재 국내 사이버보안 법제 및 거버넌스는 일관성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체로 국정원이 공공부분 정보통신망을, 과기정통부가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법제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의안번호 211314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을 통해 그 권한을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은밀한 감시와 사찰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투명성과 민관협력

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이버보안업무를 기밀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관련 권한을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보안기본법안」(의안번호 2113670. 운영찬 의원 대표발의)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1)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찬성 | 반대 | 기타 |
|---|----|----|
| ○ | | |
| <p>국정원법 개정안(20.12.) 처리이후에 국내정보가 폐지되자 국정원에서는 신원보안업무 훈령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 3급이상, 교수, 검·판사 등의 민간인의 신원조사 업무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사실상 국내정보 폐지와 상반되는 것으로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p> <p>더불어민주당과 민주정부는 권력기관이 검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해왔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권력기관들이 벌인 만행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센터의 기능 역시 국정원에 집중되는 것은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공공 부문의 범주 내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p> | | |

2) 바람직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사이버안보분야 권한 집중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센터 기능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공공성이 부여된 사이버안보기능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계속 역할을 맡더라도, 민간부문은 과기부 등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에 비해 취약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간부문의 전문가 육성 정책의 병행도 필요합니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아젠다가 사이버안보라는 이유로 무너지거나 더더져서는 안될 것입니다.